

2021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과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발전, 사회봉사, 윤리경영** 등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경기도지사

□ 신청 및 지원

- (신청기간) 2021. 4. 1.(목) ~ 2021. 4. 29.(목) 18:00까지
-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 *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 사회적경제조직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체
- (신청방법) 중소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조직 중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
 - 1) 사업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작성 및 준비
 - ※ 중소기업 혹은 사회적경제조직 부문 중 해당되는 신청서 선택
 - 2)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에서 2021년 착한기업 인증 사업 공고문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기본 사항 입력
 - 3)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별첨란에 첨부
 - 4) 하단의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정량평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한 서류 일체

구분	제출서류 목록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서식1) - 착한기업 자기평가표 및 착한기업 실적 세부내용(서식3-1, 3-2) - 증빙자료(1차 서류심사 통과기업만 제출하며, 제출기한 별도 안내예정)
자격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해당시) 공장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체납여부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기업 안정성	- 재무제표(2018~2019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0년)
고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8~2020년 각 12월 말 귀속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18~2020년)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정보동의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서식2)

□ 인증기업 선정 절차 및 일정(안)

- 공고·접수 → 1차 서류심사(5월) → 2차 현장조사(6-7월) → 3차 선정심 의위원회(8월) → 인증서 수여식(연말 예정) → 판로개척 지원
 - ※ 1차 서류심사 선정기업은 자기평가표에 기재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현장실사 전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음

□ 착한기업 인증 혜택

- (인증패)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현판 및 착한기업 상표 사용
 - ※ 인증 유효기간 : 3년
- (판로개척 지원) 기업별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사업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20% 이상 자부담
 - 2021년에 추진한 건에 대하여 집행분 소급 지원 가능
 - 지원항목

구분	추진과제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마케팅	광고홍보 지원	잡지광고 또는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홈페이지(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제품카탈로그(국문, 외국어)제작비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기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화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목업 제작비 지원
	금형제작 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컨설팅	경영컨설팅 지원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한 컨설팅 및 보고서 제작비용 지원

□ 유의사항

- o (선정·지원 제외) 아래와 같은 기업은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사실 있는 경우
 - 당해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 사실이 발견된 기업
 - 지원과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담당자 승인 없이 진행한 기업
 - 평가 및 지원 절차에 필요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
 - 개발을 수행하였으나 개발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과제를 중단, 실패한 경우
 - 사유가 정당치 않은 세부사업 참여 취소 또는 포기한 기업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부동산업 등 신청 제외 업종(아래 표 참조)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1	한식 음식점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56113	일식 음식점업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이용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96112	두발마용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13	피부마용업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96119		기타마용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6121		욕탕업	
	56193	치킨 전문점	96122		마사지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96129		기타마용관련서비스업	
	56132	이동 음식점업	96912		가정용세탁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96913		세탁물중급업	
	56211	일반유희 주점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212	무도유희 주점업	96922		화장, 모지분양 및 관리업	
	56219	기타 주점업	96991		예식장업	
	56191	제과점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캠블링 및 베틀업				

o (인증취소) 아래 항목 해당 시 인증기간 중 인증 취소 가능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 착한기업 인증 지정 후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직
- 불법·부당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착한기업인증을 취득한 경우

o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 및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건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도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홍선아 대리

- TEL. 031-259-6277
- e-mail : hongsa@gbsa.or.kr
- 이지비즈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 : TEL. 031-259-6299

□ **붙임**

-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